

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8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통하여,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지원을 원활히 하고 체육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「평창군 체육진흥 조례」를 일부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13조)

- 2023년 10월 16일까지 ⇒ 2028년 10월 16일까지 : 5년 연장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제159조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4조

나. 예산조치 : 평창군체육진흥기금 및 이자수입금 사용범위 활용

다. 합 의 : 해당 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: 23. 8. 2. ~ 23. 8. 21.(20일간)실시, 의견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*기획실-3362(2023.8.2.)호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 *기획실-3362(2023.8.2.)호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의견 있음 *가족복지과-5672(2023.8.8.)호

· 미반영 : 제4조(구성) 위원회의 성별 균형 관련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 “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0월 16일까지로 한다.”를 “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0월 16일까지로 한다.”로 변경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기금의 관리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23년 10월 16일까지로 한다.</u>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13조(기금의 관리)</p> <p>① (현행과같음)</p> <p>② (현행과같음)</p> <p>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28년 10월 16일까지로 한다.</u>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.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(제3조제1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제13조 제3항(기금의 관리) ‘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0월 16일까지로 한다. ‘에 따라 향후 5년간 기금 존치 및 사용하는 비용 발생

※조성목표액 : 50억원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제15조(기금의 사용)에 따라 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 관련 사업 추진 계획을 비추어 비용 추계

나. 추계 결과

○ 예산소요액 : 450,000천원(2019년)

- 연례 추진 행사로 평창군 체육분야 유공자시상(평창군 체육인의 밤 행사) 비용 50,000천원(200여 명 대상)
- 스포츠마케팅 사업에 따른 도 단위 이상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비용에 400,000천원
- 추가로 각종 체육대회의 참가에 따른 출전지원금에 비용 발생

다. 재원조달 방안

- 군 일반회계의 출연금 및 기금 운영 수익금

3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
연락처	(033) 330 - 2018

< 연도별 비용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계
세 입							
세 출		450,000	450,000	450,000	450,000	450,000	2,250,000
평창군 체육인의밤 행사 개최		50,000	50,000	50,000	50,000	50,000	250,000
도 단위 이상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		400,000	400,000	400,000	400,000	400,000	2,000,000
재원 조달		3,000,000*	500,000	500,000	500,000	500,000	5,000,000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					
	지방세						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3,000,000*	500,000	500,000	500,000	500,000	5,000,000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민간자본							
해외자본							
기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

* '24년도 기금은 2023년 기금 조성 잔액(2,473,000천원)이 포함된 비용 추계자료임.